

생명공학연구센터 운영세칙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6조(참여교수) ① 센터 참여교수란 대학의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로서 센터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연구, 사업, 운영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.</p> <p>② 센터의 연구, 사업, 운영 등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는 별지 서식 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센터 참여교수의 승인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.</p>	<p>제6조(조직) 센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, 팀 등의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, 하부조직의 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/p>	<p>독립채산기관 운영규정 반영</p>
<p>제7조(센터입주) ① 센터 참여교수의 센터 입주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추천서, 바이오테크 포텐셜(Biotech Potential), 센터시설 및 기술운영기여도, O/H 수입 등 센터 재정운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되, 운영위원회 심의와 센터장의 승인절차를 따른다.</p> <p>②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센터 참여교수는 별지 서식 3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구성원) ① 센터에는 운영 목적에 따라 참여교수, 연구원, 행정원, 기능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위원회에서는 배정된 공간에 입주를 희망하는 특수실 협실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추천서와 기여도를 평가하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.</p>	<p>기존 7조 1항과 2항을 7조2항으로 통합하고 7조1항 수정</p>
<p>제8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회계는 대학회계 내 별도의 구분회계로 관리한다.</p> <p>② 센터는 연구수입,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.</p> <p>③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는 센터에서 부담한다.</p> <p>④ 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, 유틸리티비 및 관리운영비는 대학과 실비 정산한다.</p> <p>⑤ 센터에서는 재정 자립화 및 특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</p>	<p>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는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5~7명 내외로 구성한다. 주요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센터의 운영세칙(지침 제외)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. 센터 조직, 정원에 관한 사항 3. 센터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. 센터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.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여하는 사항 	<p>운영위원회 기능 명확화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매년도 말 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	③ 위원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	
제9조(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센터장이 임명하는 5~7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, 행정팀장을 간사로 둔다.	제9조(준용기준)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	
제10조(준용기준)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	(삭제)	
별지서식2, 3	(삭제)	